

의안번호	2219374
의 퇴 인	김남근의원
회 답 일	2026. 8. 20.
추 계 번호	26C2945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특례시장이 인구 100만명당 1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,764억원(연평균 753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(안 제15조의17)	1,606	470	514	561	614	3,764	75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17 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제1항	시·도지사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 ※ (현행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21조 (경비의 보조) 제1항	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5조의17 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제1항	○	○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21조(경비의 보조) 제1항	×	○ 국가의 경비 보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확대 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운영비 총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국가의 경비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비용 부담을 대체할지 또는 총 운영비를 확대할지 여부를 알 수 없고, 확대 규모를 합 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16개 시·도와 5개 특례시(수원시·용인시·고양시·화성시·창원시)에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경우, 조리원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
- 2026년 7월 1일 현재 전국에 29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으며, 현행법 유지 시 공공산후조리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 시행 시 신규 설치될 개소 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 100만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에 따른 자부담이 있으므로 자체운영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본 추계서는 국가재정의 회계처리 방식을 고려하여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추가 지출분만 고려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과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16개 시·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서는 공공산후조리원 32개소를 신규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¹⁾, 16개 시·도와 5개 특례시의 인구 100만명당 1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경우, 2028년 32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며, 이후에는 추가 설치 없이 운영을 유지하면 개정안에 명시된 설치 개소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
 - 국가데이터처의 시도별 「장래인구추계」 자료와 「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」, 「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」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
 - 5개 특례시에 각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, 특례시가 속한 시·도의 잔여 설치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
 - * 예시)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2개소를 추가 설치해야 하나, 경기도 내 특례시인 수원시·용인시·고양시·화성시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, 특례시 4개소와 경기도 내 잔여 8개소(총 12개소)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
1)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 5개소를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,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(위탁 운영 포함)하는 반면,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산후조리원을 안심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므로, 본 추계서에서 안심산후조리원은 고려하지 않음. 참고로, 서울시의 안심산후조리원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시범운영 중으로, 양천구, 강서구, 도봉구, 강동구, 금천구의 민간산후조리원 각 1개소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였으며,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

[표 2] 공공산후조리원 기 설치 개소 수 및 개정안에 따른 신규 설치 개소 수

(단위: 개소)

구 분	기 설치	필요 개소 수					신규 설치 개소 수				
		2028	2029	2030	2031	2032	2028	2029	2030	2031	2032
전 국	29	56	56	56	56	56	32	0	0	0	0
서울특별시	2	9	9	9	9	9	7	0	0	0	0
부산광역시	0	3	3	3	3	3	3	0	0	0	0
대구광역시	0	2	2	2	2	2	2	0	0	0	0
인천광역시	0	3	3	3	3	3	3	0	0	0	0
전남광주통합특별시	7	3	3	3	3	3	0	0	0	0	0
대전광역시	0	1	1	1	1	1	1	0	0	0	0
울산광역시	1	1	1	1	1	1	0	0	0	0	0
세종특별자치시	0	0	0	0	0	0	0	0	0	0	0
경기도	2	14	14	14	14	14	(12) 8	0	0	0	0
강원도	8	2	2	2	2	2	0	0	0	0	0
충청북도	1	2	2	2	2	2	1	0	0	0	0
충청남도	2	2	2	2	2	2	0	0	0	0	0
전라북도	1	2	2	2	2	2	1	0	0	0	0
경상북도	3	3	3	3	3	3	0	0	0	0	0
경상남도	1	3	3	3	3	3	(2) 1	0	0	0	0
제주특별자치도	1	1	1	1	1	1	0	0	0	0	0
특 례 시	경기도수원시	0	1	1	1	1	1	0	0	0	0
	경기도용인시	0	1	1	1	1	1	0	0	0	0
	경기도고양시	0	1	1	1	1	1	0	0	0	0
	경기도화성시	0	1	1	1	1	1	0	0	0	0
	경상남도창원시	0	1	1	1	1	1	0	0	0	0

주: 괄호 안은 특례시 신규 설치분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 설치 개소 수이며, 실제 비용추계시에는 특례시 신규 설치분을 제외한 잔여분만 해당 지역 신규 설치 개소분으로 산정

자료: 국가데이터의 「장래인구추계」와 「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」, 「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」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설치할 지역과 해당 지역의 재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²⁾,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설치비 및 운영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(설치비) 추계기간 중 첫해에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설치비 단가(병원 자부담 제외 50억 1,900만원)를 준용

2) 기 설치 사례 분석 결과,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규모는 지역의 인구나 출생아 수와 관련이 없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(pp.7~9 [참고자료])

- (운영비) 추계기간 중 두 번째 해부터 운영비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2026년 평균 운영비 예산액(11억 2,400만원)을 기준으로 하여, 2022~2026년 평균 운영비 예산 추세(연평균 9.3% 증가)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

- 추계 결과, 시·도지사 및 특례시장이 인구 100만명당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3,76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시·도 및 특례시에 인구 100만명당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설치 시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억원, 개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개소당 비용 합계(A)	50.19	14.68	16.05	17.54	19.18	-	-
설치비	50.19	0	0	0	0	-	-
운영비	0	14.68	16.05	17.54	19.18	-	-
설치 대상 지역 수(B)	32	32	32	32	32	-	-
추가재정소요(A×B)	1,606	470	514	561	614	3,764	7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참고로, 2026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2/3를 보조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, 총 예산 325억 8,500만원 중 217억 2,300만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추산됨

- 이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추계임

[표 4]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예산액의 2/3 국비 지원 가정 시 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현행	국비 2/3 지원 가정	
	전액 지방비(A)	국비(A*2/3)	지방비(A*1/3)
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예산	32,585	21,723	10,862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(2026.7.1. 기준)

지역	산후조리원명	개소일	운영 형태	면적 (m ²)	설치비 (백만원)	이용료 (만원)	2026년도 예산(백만원)
서울 송파	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	2014-02-27	위탁	1,298	8,878 (구비 100%)	190	3,148
서울 서대문	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	2023-12-01	위탁	1,187	10,195 (구비 5,195, 시특별교부금 5,000)	250	2,311
울산 북구	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	2021-07-26	위탁	2,883	9,417 (국비 6,417, 시비 3,000)	189	1,213
경기 여주	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	2019-05-03	위탁	742	5,120 (도비 2,000, 시비 3,120)	168	1,043
경기 포천	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	2023-05-02	위탁	2,436	도비 1,018 시비 438	168	1,512
강원 삼척	삼척의료원 공산후조리원	2016-02-16	위탁	765	880 (국비 325, 도비 325, 의료원 230)	180	1,157
강원 철원	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	2020-02-24	위탁	1,318	5,054 (특교세 800, 도비 600, 군비 3,654)	179	995
강원 화천	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	2022-02-01	위탁	603	1,170 (특교세 300, 도비 230, 군비 640)	180	1,110
강원 양구	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	2020-07-13	위탁	825	2,940 (도비 900, 군비 2,040)	180	958
강원 양양	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	2024-05-24	위탁	1,736	6,143백만원 (특교세 600, 도비 1,900, 군비 3,643)	180	1,230
충남 홍성	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	2022-02-07	직영	580	982 (특교세 400, 도비 200, 군비382)	182	1,000
전남 해남	전남공공산후조리원1호점	2015-09-01	위탁	493	964 (도비 500, 자부담 464)	154	361

지역	산후조리원명	개소일	운영 형태	면적 (m ²)	설치비 (백만원)	이용료 (만원)	2026년도 예산(백만원)
전남 강진	전남공공산후조리원2호점	2018-05-18	위탁	616	1736 (국비 718, 도비 718, 자부담300)	154	399
전남 완도	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	2019-06-11	위탁	730	1,693 (도비 500, 군비 250, 자부담 943)	154	381
전남 나주	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	2020-12-07	위탁	797	1,263 (도비 500, 자부담 763)	154	560
전남 순천	전남공공산후조리원5호점	2022-03-15	위탁	196	500 (도비 100%)	154	500
경북 울진	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	2020-09-15	위탁	710	600 (도비 300, 군비 300)	182	780
경북 김천	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	2022-10-31	위탁	1,432	7,517 (도비 2,779 시비 4,738)	168	1,485
경북 상주	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	2023-12-28	위탁	1,997	9,195 (도비 1,200, 시비 7,095, 특교세 900)	180	1,580
경남 밀양	밀양공공산후조리원	2022-04-29	위탁	524	3,000 (도비 1,000, 시비 2,000)	160	944
제주 서귀포	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	2013-03-29	위탁	548	1,831 (특교세 500, 국비 127, 도비 1,204)	154	805
충북 제천	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	2025-07-28	위탁	1,375	6,831 (도비 4,161, 시비 2,670)	190	1,514
충남 논산	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	2025-10-22	위탁	2,320	12,400 (지방소멸대응 기금 5,000, 특교세 300, 시비 7,100)	182	1,600
강원 영월	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	2025-11-18	위탁	1,388	6,520 (기금 2,255, 도비 406, 군비 3,859)	180	1,086

지역	산후조리원명	개소일	운영 형태	면적 (m ²)	설치비 (백만원)	이용료 (만원)	2026년도 예산(백만원)
강원 속초	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	2025-12-24	위탁	903	7,900 (도비 1,000, 시비 6,900)	182	1,020
전북 남원	남원시공공산후조리원	2026-01-12	위탁	2,410	14,044 (지방소멸대응 기금 8,344, 도비 3,500, 특교 500, 시비 1,700)	180	1,400
전남 여수	여수시 공공산후조리원	2026-01-28	위탁	894	3,897 (도비 3,442, 자부담 455)	160	612
전남 광양	전남공공산후조리원 6호점	2026-03-03	위탁	2,106	12,360 (도비 4,000, 시비 6,000, 자부담 2,360)	160	498
강원 태백	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	2026-04-13	위탁	931	6,343 (기금 4,000, 시비 2,343)	180	1,383

주: 1. 설치비 재원 중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을 의미함

2. 2026년도 예산은 모두 지방비

자료: 보건복지부